

2026년도

노사문화 우수기업·大賞 선정 사업 안내서



2026년도
노사문화 우수기업·大賞 선정
사업 안내서

목차

I. 2026년 주요 변경사항	1
II. 목적 및 그간의 경과	2
III. '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大賞 선정 계획	3
1. 노사문화 우수기업·대상 신청	3
2. 심사 및 선정	5
3. 선정취소	9
4. 시상 및 홍보	11
5. 추진일정	12
붙임 1. 선정기업에 대한 지원내용	13
붙임 2. 신청서 접수처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	14

I

2026년 주요 변경사항

I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분리 심사·선정, 공공부문 선정규모 확대

-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공부문의 책임과 역할 강화

I 체불 기업에 대한 심사 강화 및 우대조치 철회 요건 조정

- 체불 근절 및 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한 노동존중사회 구현

구 분	기 존	변 경
공공부문 선정규모	전체 40점 내외, 그 중 공공부문은 4~8점(평균 18% 비중)	25%로 확대 총 40개소 내외(공공부문 10개소)
공공부문 평가배점	민간부문과 동일	공무직, 비정규직 등 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 노력 항목 배점 확대
감점기준	신고사건, 감독 무관하게 노동관계법 위반 1건당 10~15점 감점 [최대 감점 한도(100점)]	(감독) 최대 감점한도 30점으로 조정 (단, 체불 위반사항은 한도에 관계없이 추가 감점) (신고사건) 기간 내 2회 이상 사건이 제기되어 체불 확인 시 20점 추가 감점
우대조치 철회요건	고액임금 체불(10억원 이상)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업장	5억 원 이상 또는 3회 이상 체불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업장
가점항목	(신설)	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참여 (+10점 가점)
		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 참여 사업장 (+20점 가점)
		초기업 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 (원하청간 상생협력 평가항목에 추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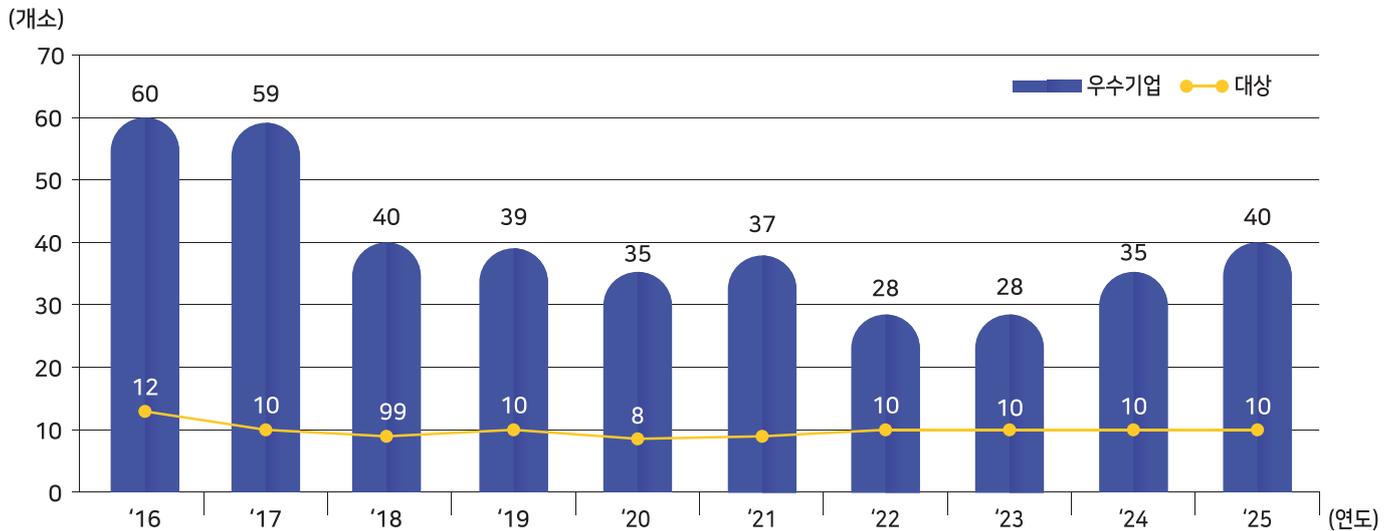
II

목적 및 그간의 경과

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·지원

- 이를 통해 상생·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으로 확산해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

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大賞 선정 현황(최근 10개년)



※ '00년~'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총 1,619개사, 노사문화大賞 총 271개사 선정·시상

III

'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大賞 선정 계획

기본 방향

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업종·규모에 관계없이 공개 경쟁을 통해 노사문화가 우수한 사업장을 선정·지원

1 신청자격 및 방법

1 신청자격

- I (우수기업)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,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(공고일 기준)
 -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 한함
- I (大賞) '24~'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

(결격사유)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심사대상에서 제외

- ① 최근 3년 이내에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
- ② 노사문화 우수기업·대상 선정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장
- ③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또는 공표가 확실시 되는 사업장
- ④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명단이 공개되거나,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사업장
- ⑤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여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라 최근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
- ⑥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,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업장
- ⑦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, 「지방세징수법」 등에 따라 고액·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장
- ⑧ 최근 3년간 부당노동행위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)로 기소된 사업장
- ⑨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우수기업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

2 신청방법

신청기간

- (우수기업) 2026. 3. 10.(화) ~ 4. 15.(수) 18:00시까지
- (大賞) 2026. 7. 16.(목) ~ 8. 18.(화) 18:00시까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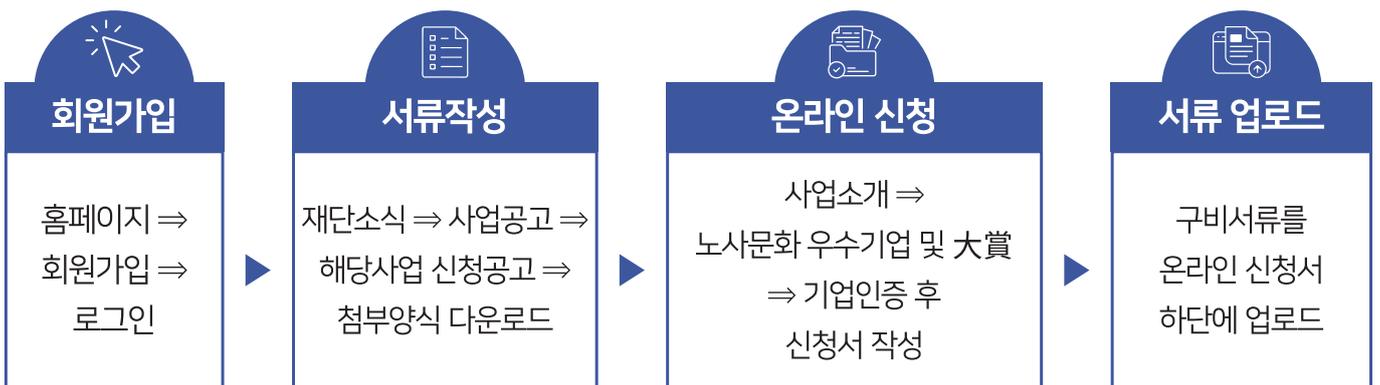
신청서류

번호	구비서류	서류양식	작성방법
1	지원신청서	붙임1	온라인 작성 및 서명된 스캔본 제출
2	우수 노사문화 추진실적	붙임2	한글 및 PDF 파일로 제출 (증빙자료 포함 A4 50페이지 이내)
3	추진실적 증빙자료	-	PDF 파일로 제출
4	납세증명서	-	국세청 발급 후, 스캔본 제출
5	사업자등록증 사본	-	스캔본 제출

▶ 공고문 선정 계획서 내 <붙임1> 신청서 및 <붙임2> 우수 노사문화 추진실적 양식 참조

신청방법

-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(www.nosa.or.kr)에서 신청기간 내 접수



- 반드시 노·사 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
* 복수노조 사업장은 가급적 전체 노조 참여하에 공동명의로 신청
- 중소기업·대기업*.공공기관**을 구분하여 신청
*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며, 그 외에는 대기업으로 간주

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근로자 기준

- ▲ 제조업: 500명 이하
 - ▲ 광업, 건설업, 운수·창고업, 정보통신업, 보건업 등: 300명 이하
 - ▲ 도매·소매업, 숙박·음식점업, 금융·보험업 등: 200명 이하
 - ▲ 그 밖의 업종: 100명 이하
- * 사업장(공장 등)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업 전체 노동자수를 기준으로 구분

** 공공기관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 중 「지방공기업법」의 적용을 받는 기관

2 심사 및 선정

1 심사위원회 구성

| 노사문화 우수기업과 노사문화 大賞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

- 노사관계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

* 신청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제

|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
< 노사문화 우수기업 심사위원회 >

- 당연직(2인): 지방고용노동청장(대표지청장), 노사발전재단 책임자
- 지명직(5인 이내): 지방고용노동청장(대표지청장)이 추천하는 전문가

< 노사문화 大賞 심사위원회 >

- 당연직(2인): 노사협력정책관, 노사발전재단 책임자
- 지명직(5인 이내):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

2 노사문화 우수기업 심사·선정

1 사전검증 실시(지방관서)

사업장 담당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 등 해당 여부*,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서 접수 시 노동자 대표 동의 여부 등에 대해 사전검증 실시

- * ▲ 최근 2년 이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건에 대해 인용재결(구제명령) 여부
- ▲ 최근 2년 이내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'기소' 의견 송치 및 과태료 부과 여부
- ▲ 최근 2년 이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 여부

- 사전검증서 작성 후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'노사발전재단 통합정보시스템 (관리자페이지)에서 해당 사업장의 심사자료 탭에 업로드, 1차 서면심사 점수에 반영
- 담당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장 직전 2년간* 사업장 감독 실시 내역과 신고사건 조사내역(노사누리 전산조회 결과) 함께 제출

* 조사 기간: 우수기업 '24.1.1.~'26.4.15. (우수기업 신청마감일까지)
大賞 '24.1.1.~'26.8.18. (大賞 신청마감일까지)

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(최대 100점)

- 동일 사안으로 감점이 중복될 경우에는 가장 큰 점수를 감점

감점 기준

- ◇ 최근 2년 이내 부당해고 등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사례(1건당 15점)
- ◇ 최근 2년 이내 노동관계법 위반 기소의견 송치 및 과태료 부과(1건당 15점)
- ◇ 최근 2년 이내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*된 경우(1건당 10점)

* 신고사건, 감독 시 위반사실 확인, 체불사건의 경우 체불확정이 되었을 때

- 감독의 경우 1회 감독 시 위반 사실이 3건 이상인 경우에도 최대 30점 감점 (단, 체불 위반사항은 최대 30점 감점에 관계 없이 감점)
- 신고사건의 경우, 기간 내 2회 이상 체불 확인될 경우 20점 추가 감점

* 신청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업장은 심사 제외

2 1차 심사(서면심사) ▶ 공고문 선정 계획서 내 <붙임4> 1차 사례발표 심사 기준 참조

항목별 5단계 척도로 심사 → 취득점수를 평균하여 만점(1,000점)의 90%(900점) 이상 획득한 사업장을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

심사항목	심사기준	배점 (1,000점±가·감점)
노사관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최근 2년간 대립 •갈등적 노사관계 요소 •노사관행 개선실적 	100점
노사문화 실천요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열린 경영과 노동자 참여 •인적자원 개발·활용 •적정 임금수준 보장 및 격차 해소 노력 •근로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 •기업 고유의 노사문화 정착 노력 	500점
노사의 사회적 책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•노사의 사회적 의무 •기업의 노동정책 등의 이행정도 	400점
(가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일터혁신 인증기업, 상생파트너십 사업참여 •원하청 공동노사협의회 구성+상생협력 체결 •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 참여 사업장 	10점 20점 20점
(감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최근 2년간 노동관계법 위반 	100점 한도

3 2차 심사(사례 발표) ▶ 공고문 선정 계획서 내 <붙임5> 2차 사례발표 심사 기준 참조

지역별 경진대회 형식으로 사례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항목별 5단계 척도로 심사, 필요시 현지 실사

심사항목	심사기준	배점 (700점)
노사관계일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대립·갈등적 노사관계 요소 및 극복 사례, 노사관행 개선실적 등 	100점
열린 경영 및 노동자 참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경영현황 설명을 위한 채널의 다양성, 일터혁신 등에 노동자 참여 정도 	100점
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프로그램 내용, 교육훈련의 만족도 및 효과성, 공정한 인사관리, 배치전환 등 고용유지 노력 	50점
임금 적정성 및 격차해소 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산업 평균 대비 임금 수준, 급여증가율, 임금 격차 해소 노력 	100점
근로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근로복지시설 운영·개선, 작업환경 개선,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노사의 노력 및 효과성, 일·생활 균형 실현 	100점
노사의 사회적 책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기업 내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처우개선, 원·하청 간 공정거래 실천 프로그램, 기업이익의 사회적 환원, 기업의 노동정책 이행 정도 	200점
발표 태도 및 기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발표 태도 및 노사 대표자 참여도 등 	50점

4 선정

| 2차 심사에서 만점(700점)의 85%(595점) 이상을 획득한 사업장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(1차 서면심사 점수 미반영)

▶ 공고문 선정 계획서 내 <붙임 2> 노사문화 우수기업 심사 시 유의사항

• 선정된 사업장은 본부 검증 및 조정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

* 청(대표지청)은 선정(내정) 즉시 본부 보고 → 본부는 각 실·국 조회 등 검증 실시, 필요시 지역별로 중복 사업장 조정의견 통보 → 청(대표지청) 최종 확정

| 총 40개소(공공부문 '10개소') 내외 선정 예정

• 2026년에는 공공부문의 모범사용자를 발굴하고자 비정규직 등 고용불안 직종의 차별 해소, 처우 개선, 고용형태 개선에 공적이 있는 공공기관을 우대하여 선정 비중 확대 예정

3 노사문화 大賞 심사·선정

1 대상(大賞) 규모(안)

| 대통령상 2점, 국무총리상 2점, 장관상 6점(예정)

| 노사문화大賞 신청 사업장에 대해 1차 서면심사를 통해 '26년 시상규모의 1.3~1.4배수 범위 내에서 2차 심사대상으로 선정

2 2차 심사(사례발표)

| 노사발전재단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장에 대해 노조측(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)의 수상 의사 재확인

| 1차 심사 통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거쳐 「노사문화 우수사례 경진대회(사례발표 및 질의응답)」를 개최하여 취득점수에 따라 노사문화大賞 선정(1차 서면심사 점수 미반영)

* ▲ 노사발전재단은 大賞 신청기업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전검증 의뢰

▲ 1·2차 심사기준은 노사문화 우수기업 심사와 동일한 기준 및 방식 적용

4 선정 사업장 지원 ▶ <붙임 1> 선정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참조

| (유효기간) 우수기업·大賞기업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

| (지원내용)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 행정 또는 금융상 우대

3 선정 취소 및 우대조치 철회

1 선정 취소

|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판명된 경우 또는 선정되기 이전의 노동관계법 등 위반으로 선정 이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노사문화 우수기업·대상 선정 취소

| 선정이 취소된 경우, 취소된 날로부터 우대지원 혜택 중단 및 5년간 신청자격 박탈

* 소속 사업장이 선정 취소된 경우 동 사업장이 속한 본사와 소속 사업장 모두 5년간 신청자격 박탈

2 우대조치 철회

| 선정 이후 혜택 유효기간 내에 노동관계법 등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철회(아래 각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심사위원회 개최)

-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
- ②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명단이 공개되거나,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주가 대표인 사업장
- ③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
- ④ 중대산업재해(중대재해처벌법) 또는 중대재해(산업안전보건법)가 발생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업장
- ⑤ 부당노동행위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), 5억 원 이상 또는 3회 이상 체불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업장
- ⑥ 사회적 물의 발생으로 수사·특별감독 실시 결과, 노동관계법 10건 이상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

| 우대조치가 철회된 경우, 철회된 날로부터 우대지원 혜택 중단 및 5년간 신청자격 박탈

* 소속 사업장이 선정 철회된 경우 동 사업장이 속한 본사와 소속 사업장 모두 5년간 신청자격 박탈

2 시기

| 유효기간(3년) 동안 심사위원회 개최 사유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하여 결정

3 절차

| 매 반기 말 또는 사유 발생 시에 과거 3년간의 결격사유 조회(청·대표지청) → 결격 사유 발생 확인
→ 해당 사업장 조사(지방관서) → 심사위원회* 개최 및 심의 결정(관할 지방청·대표지청·본부) → 취소
또는 철회

* 선정 당시 또는 최근 심사위원회와 동일하게 구성·운영 원칙, 청(대표지청)은 심사결과를 본부, 지방관서 및 국세청 등 유관
기관에 통보

4 시상 및 홍보

2 선정 공고

| 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 일괄 공고

2 시상식 및 인증서·인증패 전수

|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·인증패 전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

| 노사문화大賞 시상식: 12월 중 개최

3 홍보

| (사전 신청) 포상계획 안내문 홈페이지(지방·본부) 게시, 홍보물(포스터·리플렛 등) 배부, 사용자 단체에 후보사업장 발굴 요청, 일터혁신·상생 파트너십 프로그램 참여 사업장 대상 집중 홍보

| (선정후 사례 확산) 공고, 보도자료 배포, 우수사례 영상 제작 및 SNS 홍보 등을 통하여 노사문화 우수기업·대상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산업현장 저변으로 확산

5 추진일정

구 분	추진일정	비 고
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접수	3.10. ~ 4.15.	•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접수 (www.nosa.or.kr)
서류검토 및 사전검증	4.16. ~ 4.22.	• 지방고용노동관서(근로감독관)
심사준비	4.23. ~ 4.29.	• 지방고용노동청(대표지청), 노사발전재단 • 감점기준 및 결격사유 등 조회
지역1차 심사(서류심사)	4.30. ~ 5.13.	• 8개 지방청·대표지청별로 심사
현지 실사(필요시)	5.14. ~ 5.21.	지방고용노동청(대표지청)
지역2차 심사(사례발표)	5.22. ~ 6.8.	• '경진대회' 형식으로 개최
심사결과 보고	~ 6.9.	• 즉시 본부 보고(청·대표지청)
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공고	6월 말	• 공고(고용노동부, 노사발전재단)
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	7월 중	• 권역별 계획 수립
노사문화 大賞 신청접수	7.16. ~ 8.18.	• '24년~'26년 우수기업 • 노사발전재단
심사준비 및 사전검증	8.19. ~ 8.28.	• 노사발전재단
大賞 1차 심사(서류심사)	8.31. ~ 9.9.	• 13~14개 기업을 2차 심사대상으로 선정
현지 실사	9.10. ~ 9.23.	• 고용노동부, 노사발전재단
大賞 2차 심사(사례발표)	10월 초	• 大賞 선정 및 훈격 결정
노사문화大賞 공고	10.22. (예정)	• 공고(고용노동부, 노사발전재단)
우수사례 영상 제작 등	11~12월 중	• 우수사례 영상 제작·배포
시상식 개최	12월 중	• 시상 및 합동시상식 병행 • 보도자료 배포

※ 추진상황 및 업무사정 등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

< 붙임 1 >

선정기업에 대한 지원내용

지 원 내 용	노 사 문 화 대 상	노 사 문 화 우 수 기 업	담 당 기 관
< 행정상 우대 >			
• 정부포상	대통령·국무총리상, 고용노동부장관상	인증서·인증패	고용노동부
• 정기근로감독	면 제 (최장 5년)	면 제 (최장 5년)	
• 노동절 정부포상 가점	2.5점 가점	2.5점 가점	
• 상품용기 등에 우수기업 표식	우수기업 표식	우수기업 표식	
• 소개책자 제작 및 유관기관 비치	제작·송부	제작·송부	
• 일반용역 적격심사시 우대	0.5점 가점	0.5점 가점	국 방 부 (재정회계담당관)
• 계약 적격심사시 우대	0.1점 가점	0.1점 가점	방위사업청 (계약제도발전과)
• 세무조사 유예 (모범납세자에 한함)	1년(2년: 국무총리상 이상)		국 세 청 (납세자보호담당관)
• 납세담보 제공 면제 (모범납세자에 한함)	2년(3년: 국무총리상 이상)		
•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우대	2점 가점	2점 가점	중소벤처기업부 (인력정책과)
• 현역인원배정시 우대	2점 가점	2점 가점	
• 클린사업장 인증시 우대	최우선 선정	2점 가점	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(지원계획부)
•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	5점 가점		
< 금융상 우대 >			
• 대출금리	0.1% 우대	0.1% 우대	농협
•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	우 대	우 대	신한, 하나, 국민
• 신용보증시 보증한도	우 대	우 대	신용보증기금

※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위 내용 중 일부내용이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

< 붙임 2 >

■ 노사문화 우수기업·大賞 접수처: 노사발전재단

(우) 04212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, 6층 노사협력팀

• 문의 및 접수: 노사발전재단 노사상생본부 노사협력팀

Tel. 02-6021-1062	Fax. 02-6021-1488	E-mail. prize@nosa.or.kr
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■ 노사문화 우수기업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

서울지방 고용노동청	노사상생지원과	02-2250-5726	부산지방 고용노동청	노사상생지원과	051-850-6335
서울강남지청	노동기준조사1과	02-3465-7367	부산동부지청	노동기준조사1과	051-559-6662
서울동부지청	노동기준조사1과	02-2142-8849	부산북부지청	노동기준조사과	051-309-1563
서울서부지청	노동기준조사1과	02-2077-6103	창원지청	노동기준조사1과	055-239-6557
서울남부지청	노동기준조사1과	02-2639-2232	울산지청	노사상생지원과	052-228-3822
서울북부지청	노동기준조사1과	02-950-9819	양산지청	노동기준조사1과	055-370-0962
서울관악지청	노동기준조사1과	02-3282-9048	진주지청	노동기준조사과	055-760-6504
충북지방 고용노동청	노사상생지원과	032-460-4561	통영지청	노동기준조사과	055-650-1916
인천북부지청	노동기준조사1과	032-540-7956	대구지방 고용노동청	노사상생지원과	053-667-6267
부천시청	노동기준조사1과	032-714-8746	대구서부지청	노동기준조사1과	053-605-9067
경기지청	노사상생지원과	031-259-0347	포항지청	노동기준조사1과	054-271-6746
의정부지청	노동기준조사1과	031-850-7738	구미지청	노동기준조사과	054-450-3522
고양지청	노동기준조사1과	031-931-2895	영주지청	노동기준조사팀	054-639-1152
성남지청	노동기준조사1과	031-788-1516	안동지청	노동기준조사팀	054-851-8033
안양지청	노동기준조사1과	031-463-7420	광주지방 고용노동청	노사상생지원과	062-975-6314
안산지청	노동기준조사1과	031-412-1937	전주지청	노동기준조사1과	063-240-3365
평택지청	노동기준조사1과	031-646-1198	익산지청	노동기준조사과	063-839-0017
강원지청(대표지청)	노동기준조사과	033-269-3553	군산지청	노동기준조사과	063-450-0529
강릉지청	노동기준조사과	033-650-2514	목포지청	노동기준조사과	061-280-0144
원주지청	노동기준조사과	033-769-0806	여수지청	노동기준조사과	061-650-0127
태백지청	노동기준조사팀	033-550-8623	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	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	064-728-7112
영월출장소	노동기준조사팀	033-371-6236	대전지방 고용노동청	노사상생지원과	042-480-6255
			청주지청	노동기준조사1과	043-299-1163
			천안지청	노동기준조사1과	041-560-2885
			충주지청	노동기준조사과	043-840-4067
			보령지청	노동기준조사과	041-930-6126
			서산지청	노동기준조사과	041-661-5646

